

대법원 2018. 10. 25 선고 2018다24467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0. 25 선고 2018다244679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5. 31 선고 2017나41983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대한민국

판결 선고2018. 10. 25.

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7나41983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조희대

대법관김재형

주심대법관민유숙

대법관이동원